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66호

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

2026. 9. 15.

식품의약품안전처

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

1. 개정 이유

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도안이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도안과 유사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·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건강기능식품 관련 도안의 식별성을 높여 소비자의 오인·혼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지원하고자 건강기능식품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도안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건강기능식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 도안 변경

[안 제6조 1. 가., 안 별표 2]

- 1)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적용 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 변경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,

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1) 행정예고(공고 제2026-314호, '26.7.1. ~ '26.8.31.)
- 2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심의 여부 검토(비대상, '26.6.22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-66호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「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6년 9월 15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

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×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거나, “건강기능식품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품 포장의 유사한 바탕색으로 인해 가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도안의 크기도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<제2026-66호, 2026.9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·가공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.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세부표시기준 및 방법)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6조(세부표시기준 및 방법) ----- -----.
1.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가.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×15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거나, "건강기능식품"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.	1.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제품포장의 유사한 바탕색으로 인해 가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도안의 크기도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	

[별표 2]

GMP 도안



가. 제품 포장의 유사한 바탕색으로 인해 가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상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포장면적이 150cm² 이하인 경우에는 도안의 크기도 식별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